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세 환급금 반환결정 결의 및 통지

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다음과 같이 반환결의하고, 납세자에게 환급통지하고자 합니다.

1. 환급금액 : *****
2. 환급사유 : *****
3. 결 의 일 : 2016. 4. 27.
4. 통지방법 : 우편발송(환급액 30만원이상 등기/그외 일반우편)

- 붙임 1. 지방세환급금 반환결의서.
2. 환급반환결의내역서. 끝.

주무관 정미진 세무행정팀장 추승열 세무관리과장 송필석 기획경제국장 전결 04/27
김용운

협조자

시행 세무관리과-10293 () 접수 ()
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전화 02-3423-5604 /전송 02-3423-8865 / mejjin@gangnam.go.kr / 부분공개(6)